

의안번호	제 50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
결정의 건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
제안연월일	2020년 9월 3일

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

(의회운영위원장 제안)

의 안 번 호	509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9월 3일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 예정인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시 기 : 연도중 제2차 정례회
※ 제387회 정례회 : ' 20. 11. 9(월) ~ 12. 16.(수) (38일간)
- 기 간 : ' 20. 11. 10.(화) ~ 11. 23.(월) (14일간)
- 진행일정
 - 시기 및 기간 결정 : 9월 임시회(1차 본회의)
 -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 : 9월 임시회 중
※ 상임위별 운영위와 협의
 -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: 9월 임시회(2차 본회의)
 - 행정사무감사실시(11.10.~11.23) : 정례회(11월)
 -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: 정례회 3차 본회의(12월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9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.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.

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□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감사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 및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 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 라 한다)를 행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(이하 "감사위원회" 라 한다)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.